

코로나 19도, 경제위기도 여러분이 있기에
이겨낼 수 있습니다

소상공인
새희망자금



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[확인지급신청이란?]

새희망자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9월 24일부터 시작된 신속지급 신청이 어려웠던 사업주께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주시면, 확인하고 지급되는 신청방법입니다.

[확인지급신청 유형 및 기간]

온라인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(www.새희망자금.kr) / 10.16(금) ~ 11.06(금)

현장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주민센터 등 / 10.26(월) ~ 11.06(금) (자세한 접수처는 www.새희망자금.kr에서 확인하세요)

*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안하신 분도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(www.새희망자금.kr)에서 11월 6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

[문의]

☎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-1082 / 24시간 채팅상담 www.소상공인114.kr

[지원대상 및 지원금액]
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'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'에 따라 8월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

구 분		소상공인 여부	매출액 규모	매출액 감소	지원금액
일반피해업종		○	연 4억 원 이하	○	100만 원
특별 피해 업종	집합금지업종	○	소상공인 기준충족	무관	200만 원
	영업제한업종	○	소상공인 기준충족	무관	150만 원

* '20. 5. 31. 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중이며 휴·폐업 상태가 아닐 것

* **소상공인 기준** (매출액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 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

(예: 숙박·음식점업 10억원, 예술·스포츠 서비스업 30억원, 도·소매업 50억원 등)

(상시근로자수)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,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

■ **일반업종** '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'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

- ('19. 이전 창업) '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'19년 월평균 대비 감소
- ('20. 창업) 5. 31. 이전 창업자로서 8월 매출액이 6-7월 월평균 대비 감소
- ('19. 부가세 간이과세자)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. 단,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

■ **특별피해업종** 매출액 소상공인 기준 충족,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

- **집합금지업종** (전국)PC방,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+(수도권)학원·독서실·실내체육시설 등
- **영업제한업종** 수도권 음식점·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업종

* **제외업종**

-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도박업, 복권판매업, 전자담배도소매업, 성인용품소매 등

* 제4차 추경에 포함된 긴급고용안정지원(고용부),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(복지부) 등 다른 재난지원 사업과 새희망자금 중복 지원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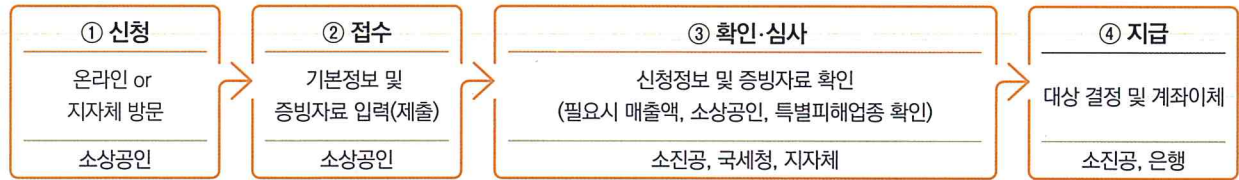


중소벤처기업부

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[확인자금신청방법]



■ **온라인** •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(www.새희망자금.kr)에서 신청하기로 사업자 대표가 직접 신청

- 본인 공인인증서와 대표자 본인의 명의 휴대폰 필요
- 유형별 증빙서류를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제출

■ **현장접수** • 기본서류 및 유형별 증빙서류를 갖춰서 사업장 소재 관할 지자체 및 주민센터 등의 새희망자금 접수처 방문 (상세 접수처는 새희망자금.kr,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공고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에서 확인)

- 기본서류 및 증빙서류 양식은 새희망자금.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

• 현장접수 기본서류

구분	증빙자료
① 신청서(붙임 제1호 서식)	•사업체 및 대표자 기본정보, 입금계좌 정보 등 기재
② 대표자 및 계좌 확인	•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 중 선택) •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최근 1개월 이내) •통장 사본(대표자 명의, 법인은 법인 명의)
③ 각종 동의서(붙임 제2.3호 서식)	•개인(행정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활용 동의서 •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

* 유형별 준비서류

구분	증빙자료
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 관련 직종 사업체	•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 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→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(고용센터 발급) •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'특고·프리랜서' 유형으로 신청했으나 현재는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 등 →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(고용센터 발급) •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급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으로는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 → 자가진단표(붙임 제6호 서식) * 신청자 명단은 고용부에 통보하여 확인 예정이며, 자가진단표 허위 판정 시 환수 예정
② 공동대표 사업체	•위임장(붙임 제4호 서식)
③ 가족 명의 계좌입금 필요 사업체	•위임장(붙임 제4호 서식), 가족관계증명서, 가족 명의 통장 사본
④ 가족 대리 신청(현장 방문 신청에 한함)	•위임장(붙임 제4호 서식), 가족관계증명서
⑤ '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 감소(6~8월) 신청 사업체(일반업종에 한함) * '19년 이전 창업자는 추가 매출 증빙서류 제출 불가(국세청 매출 정보로 확인)	•'20년 6~8월 기간 중 현금 매출 증빙서류 - 현금매출확인서(붙임 제5호 서식) - 통장거래내역서(입출금 내역서, 은행 직인(날인) 필수),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(거래 상대방 서명인 필수), POS 현금 매출액 등 * 수기 작성 간이영수증, 장부 등은 불인정 * 제출자료는 국세청 통보 예정이며, 허위 기재 판정 시 지원금 환수
⑥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,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 등	•설립 인증서 등 *사회적기업 인증서, 협동조합·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, 사회적협동조합·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·이중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, 소비자생활협동조합·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·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중 1
⑦ 합기도 체육도장 *「체육시설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 시행('19.12.26)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폐업 후 '20.6.1~6.26 중 신규 사업자 등록한 합기도장에 한함	•폐업사실증명
⑧ '20.6.1 이후 개인 → 법인 전환 사업체	•폐업사실증명(개인사업자)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

[이의신청]

-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.
- 이의신청서(새희망자금.kr에서 다운로드)를 작성하여 온라인(원칙) 또는 신청접수한 지자체 방문 신청

[유의사항]

- 제출된 서류(파일)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, 일체 반납하지 않음
-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, 중복수급·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